

중부 농축산물 물류센터 활용에 대한 제안

2015. 6

Contents

I. 배경 및 목적	1
II.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관련 현황 및 주요 쟁점	2
1. 현황	3
2. 추진경위	3
3. 대상 부지 현황	4
4. 충청남도 내부 사업 제안 내용	5
5. 주요 쟁점	11
III. 미래 트렌드·이슈 대비 전략적 대응 분야 설정	13
1. 거시적 여건변화	13
2. 중앙정부 정책 기조 변화	16
3. 충청남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부문의 선정	18
IV. 사업제안	20
1. 기본방향	20
2. 목표 및 추진전략	21
3. 핵심사업 제안	22
1) STE(A)M 교육 서비스 거점 구축운영	22
2) 3D 프린팅 교육허브 구축	27
3)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인의 동고동락	32

1. 배경 및 목적

■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무리한 매각절차 철회 및 도유재산화에 따른 활용대안 모색 필요

- 2011년부터 7회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감정평가액(688억원)과 시세(250억원) 정도로 평가)
- 충남개발공사, 충청소방학교 임대방안 추진 이후, 매각에 대한 유불리성을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도유재산화 결정

■ 대상부지의 특성 및 제약요인 검토 필요

- 자본 잠식 및 경제성 하락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자체 활용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상 부지의 특성이 미고려된 바, 부지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도유재산화 결정에 따라 충청남도의 경제통상실, 농정국, 충남개발공사, 문화산업진흥원 등에서 활용대안을 제시

■ 거시적 패러다임 변화, 국가정책 등 다양한 고려요인에 대한 잠재력 검토

- 매각, 공공목적의 사용 등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기능과 시설의 도입을 전제로 설정되어야 함
 - 대상 부지가 갖는 입지적 측면, 관련 정책의 동향 등의 정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배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고려요인에 대한 검토 필요

-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정합성 검토]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적 여건을 고려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명분성 및 정합성 제고
-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 제공] 향후 충청남도 재산으로서의 잠재력을 제고하고,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 제공

1)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1999년도 준공 이후 2009년 감사원의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보조금 반환 지시 및 매각 승인

II.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관련 현황 및 주요 쟁점

1. 현황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2길 22
- 규모 : 대지 72,518m²(당초 13,917m²), 연면적 32,530m²
- 설립예산 : 519억원
 - 국고 보조금(277억)+충남도와 천안시, 농협, 축협 등(191억) 등 출자
- 재산가액 : 668억원(11년 감정평가, 토지 457억+건물 217억+설비 14억)
- 기존사업 : 농축산물 중개(99.09~04.05), 시설물 임대(04.05~11.12)
- 현재 상황 : 도유재산 귀속 추진(물류센터 청산), 연간 유지비(제세금 등) 충당을 위해 일부를 창고용도로 임대 운영 중

2. 추진경위

- 1999. 9 충남농축산물류센터 설립
- 2004 충남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자본금 110억원) 및 운영
- 2005 유휴부지 5만 4710m², (주)더조은미래에 매각 후 부채 상환
- 2009 감사원의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보조금 반환 지시 및 매각승인
- 2010 충남농축산물류센터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충청남도과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심판은 충남도의 승소(충남 물류센터 보조금 반환 2011년까지 유예)
- 2011 부실경영으로 매년 3·4억원의 적자 발생(임대율 89% 등)
 - 농축산물과 관련 없는 반도체, 타이어, 의류 등의 업체 입

주, 농림수산물식품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반환액 228억원을 반환하도록 지적('11. 7월 / 천안뉴스)

- 7회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감정평가액(688억원)과 시세(250억 정도)차이로 매각 미성사

- 2015 물류센터 유지비 충당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13.6.1~15.12.31, 년 570백만원/정수유통(주)) 운영 중임

3. 대상 부지 현황

1) 토지 관련 현황

■ 용도지역지구상 도시지역(유통상업지역,업무설비)이며, 4동의 건축물로 구성

- 지역지구(국계법) :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유통업무설비
- 지역지구(학교보건법) : 상대정화구역
- 대지면적 73,204㎡, 연면적 32530.37㎡, 건축물수 4동, 건축면적 18,403.56㎡, 건폐율 25.14%, 용적률 27.81%
- 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로 1동(30,420.41㎡), 2동(1,960㎡), 3동(143㎡), 5동(6.96㎡)로 구성

■ 행위제한내역 : 타용도 건축물 조성시 용도지역 변경 불가피 예상

- 국계법 제76조, 시행령 제71조, 별표 11
-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별표 11, 27조, 30조
- 학교보건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제6조

〈표〉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국계법 제71조 제1항 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한 금지행위

<p>법 제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3.18.〉</p>
<p>1.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p>
<p>2. 만화가게</p>
<p>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무도장</p>
<p>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p>
<p>5. 담배자동판매기</p>
<p>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p>

출처) 학교보건법(시행 2014.7.1.) 법률 제 12131호

■ 공시지가 : 현재 490천원(2015.1)이며, 지속적인 하락 추세

- 물류센터 설립 전후 대폭 상승(9,080원→ 87,700원, 966%)
-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며, 최고 공시지가 대비 연평균 -5.7% 감소 추세

〈표〉 대상부지 공시지가 추이

년도	공시지가(원)	토지가격(원)	비고
1990	8,700	630,906,600	
1991	9,100	659,913,800	
1992	10,000	725,180,000	
1993	9,000	652,662,000	
1994	6,600	478,618,800	
1995	6,440	467,015,920	
1996	9,080	658,463,440	
1997	9,080	658,463,440	
1998	87,700	6,359,828,600	
1999	86,800	6,294,562,400	물류센터 설립
2000	80,000	5,801,440,000	
2001	80,000	5,801,440,000	
2002	85,000	6,164,030,000	
2003	90,000	6,526,620,000	
2004	110,000	7,976,980,000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2005	376,000	27,266,768,000	
2006	388,000	28,136,984,000	
2007	388,000	28,136,984,000	
2008	700,000	50,762,600,000	
2009	615,000	44,598,570,000	감사원 보조금 반환 지시 및 매각 승인
2010	597,000	43,293,246,000	
2011	597,000	43,293,246,000	적자발생
2012	588,000	42,640,584,000	
2013	540,000	39,159,720,000	임대운영시작
2014	520,000	37,709,360,000	
2015	490,000	35,533,820,000	

주1) 기준일자 : 매년 1월 1일

주2) 토지가격= 공시지가×면적

출처)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chungnam.go.kr)

2) 주변지역 현황

■ 주변지역의 생산기능 증가에 따른 개발 압력 지속 증가

- 인근 산업단지 및 공장 근로자 중심으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GS가 물류센터 연접부지에 중소형 임대주택을 건설 중
 - 건설기간 : 2014.04 ~ 2016.06

■ 주변의 생활여건은 미흡한 수준이며, 인구 유출 심화

- 기본 교육시설 부족(現 초2, 중0, 예술고1)
- 2014년초 천안시에서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성거읍 일대 78만 m²)이 취소되었음
 - 매년 1백여명씩 성거읍의 인구 감소 → 現 2만명 수준
 - 22,205명(2011) → 21,847명(2013)

■ 광역접근성은 양호하나, 시내구간 통과하여야 함에 따라 교통소통 문제 노출

- 천안 IC로부터 직선거리 약 5.4km, 이동거리 약 5.9km 정도 이격되었고, 자동차로 약 15분 소요, 북천안 IC로부터 직선거리 3.4km, 이동거리 약 5.5km 정도 이격되었고, 자동차로 약 20분 소요
- 국철1호선 천안역까지 약 9.3km 이격되어 자동차로 약 24분이 걸리고, 직산역과는 약 7.3km 이격되어 자동차로 21분 소요
- 고속도로 및 철도역과의 연결도로가 시내구간을 통과하여 잦은 신호교차로의 접촉 등으로 교통소통 및 안전 문제에 노출

4. 충청남도 내부 사업 제안 내용

1) 충남개발공사

- 임대주택 공급(행복 또는 공공임대 등)
 - 인근 근로자·대학생·신혼부부, 무주택·취약계층 등을 대상 공급
 - * 행복주택 추진시 정부예산 40% + 주택기금융자 40% 지원 가능
 - 실제 수요에 따라 임대주택 외 일반분양 병행 검토, 해당부지 내 근생 및 교육시설(중학교·어린이집) 확충하여 지역 정주환경 개선
- 미니 복합타운 조성(정주인원 3천여명 규모)
 - 주거(임대주택 등)·문화(도서관 등)·복지(유치원 등) 시설을 확충하여 인근 산단 근로자 등의 정주·고용환경을 개선
 - * 근로자 고용 촉진(성거는 고령화 지역으로 외지인 고용이 대다수) 및 그 가족의 정주기능을 지원하여 거주민의 유출을 방지
 - * 상생산단(道 정책사업) 및 행복주택 공급과 연계 가능

2) 문화산업진흥원((가칭) 아트&디자인 커뮤니케이션(ADC) 파크)

- 아트&디자인 창작 공작소(Studio) 구축·운영
 - 미술, 조각, 미디어 아트, 디자인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공용시설·장비 구축
 - 작가별 특성에 맞는 작품 제작기간 동안의 공간 및 자료·시설·장비 제공
 - 기업과 문화예술인 융합형 디자인 프로젝트 기획 및 시범 운영
 - 전시, 공연, 컨벤션, 파티, 옥션, 이벤트 등이 가능한 융합형 문화공간 조성
 - 클래식부터 인디밴드까지의 다양한 문화공연과 함께하는 파티 개최
 - 무대, 전시파티션, 영상·음향 장비, 객석 등 변신 이동형으로 구축
 - 정기적으로 문화예술 상품의 경매, 판매 등을 위한 문화예술시장 운영
 - ※ 문화부, '콘텐츠코리아 랩' 국비 사업을 유치하여 연계 추진
- 아트&디자인 체험관 및 아카데미 구축·운영

- 주민, 학생, 작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 어린이,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문화예술 분야와 지역산업과의 융합 R&D 등의 연구기능 수행 병행
- 문화예술 레지던시 및 관광형 캠프장 구축·운영
 - 작가와 문화예술인 등이 머물 수 있는 캠프형, 레지던시형 체류공간 마련
 - 작가가 작품 활동 및 제작을 위해 일정기간 캠프에 머무르며 작업
 - 작가 외에 일반인 방문객들을 위한 관광상품형 캠프장 별도 마련 운영
- 영상콘텐츠 멀티스튜디오 운영
 - 종편, 케이블 채널 약진으로 급증한 콘텐츠 제작수요 반영한 스튜디오 조성
 - * 남양주 세트장 매각 절차중. 서울,경기권에 방송국 세트장을 제외하면 멀티스튜디오는 1-2개 정도임. 다만 대전 HD드라마타운과 변별력 필요
 - 영화와 드라마 장르의 다양한 시대극(특히 1920-1940년대)과 판타지 등 복합장르를 소화할 멀티 스튜디오
 - 스튜디오 기반시설을 활용 관광, 체험, 교육산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가능
 - * 예 : '커뮤니티아트 스튜디오' , 정규 대학이 아님에도 현장 전문가 풀 활용하여 '서울종합예술학교', '명필름' 등이 소수정예 기숙사 시설까지 갖춘 전문적인 교육 기관 운영)
 - 2015년부터 구성·운영되는 '충남영상위원회' 가 위탁 운영(오픈세트-실내세트-아트스쿨까지 연계)
 - 영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멀티스튜디오로 활용 시 유리한 점
 - 외부 : 현재 모습 그대로 오픈 세트 (로케이션 차원)
 - 내부 : 냉,난방이 필요없는 봄(3~5월),가을(9~11월)에 사용
 - 위치 : 서울과의 거리와 접근성이 좋아 배우 등 일정조율 용이
 - ※ 영화 및 방송콘텐츠 관계자 현장 방문 후 활용가치가 높다는 의견
- 파크 개념의 문화소비·유통 단지 조성
 - 기존 물류 업종과 관련된 체험 콘텐츠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 ※ RC무선, 키덜트(Kids-Adult), 캐릭터 완구 등 소비층의 체험 공간 마련

- 문화콘텐츠 관련 유통-물류 업체를 유치, 프로모션하여 적극적 소비자(매니아)가 방문하여 소비하는 컨셉으로 단지 전체 활성화 분위기 유도
 - ▶ 경기도 이천에 레고 유통 창고가 있으며 분기별 창고세일 시 국내 레고매니아 집객이 상당하여 재고 물량이 전부 소진됨
 - ▶ 경기도 파주 교보문고 물류창고는 작년 가을 도서 물류창고 최초로 일반인 대상 창고오픈 실시, SNS만을 통한 홍보임에도 새벽부터 전국에서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룸
- 수요와 매니아층이 풍부한 문화콘텐츠 물류단지 유치 시 물류단지의 차별화와 집객을 유도할 수 있음
-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 스토리, 향토식품 등과 연계하는 부대시설 조성 및 운영으로 물류단지의 테마파크화 연출 가능
 - ▶ 지역색이 강한 향토음식이나 기념품을 매력적 요소로 활용
- 문화산업 분야 장비의 상설전시 제공 등으로 허브화 추진
 - 음향 및 영상기자재 관련 전시회가(KOBA, KOSOUND) 개최되고 있으나 상설전시를 하는 공간은 없음
 - ▶ 저렴한 가격으로 상설 전시공간 제공으로 문화산업 장비 업체의 물류단지 유치 가능
 - 문화산업 분야 장비는 기술혁신과 유행의 주기가 짧아 유통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고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 ▶ 수도권외 첨단 산업장비와 지역의 열악한 산업장비 교체 순환체계 형성을 위한 허브역할이 필요하나 현재 부재한 상황
- 대형 이벤트(행사)로서 ‘사이언스 메이크페어 천안’ 개최
 - 메이크페어는 테크 DIY 잡지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개인들이 창작한 물건을 만들어 대중에게 공개하여 체험 및 토론을 하는 네트워킹 행사임
 - ▶ 2014. 9. 20. 국내 개최 (메이커페어 서울/서울 국립과천과학관 앞 전시장)
 - ▶ 위 행사는 3회 개최되었으며 국내 유일 DIY 축제임
 - ▶ 세계 곳곳에서 메이크페어는 개최되고 있으며 뉴욕에서는 국내외 대기업(LG전자 등) 등도 참여하고 있음
 - 천안 과학벨트와 연계하는 동시에 3D 프린터, 웨어러블 등 사이언스 및 융합(ICT 등)에 콘셉트를 집중하여 차별화된 페이크 페어 개최 추진

- 실내외 스튜디오 세트장 조성 및 운영
 - 야외 스튜디오의 경우 시대극 중심 세트장 조성
 - 실내 스튜디오는 4계절 전천후 사용 가능토록 운영
 - ▶ 현재 건물(연건평 1만8천평) 활용하여 전체 구상의 시발점
 - * 대전 HD 드라마 타운과의 중복성 우려(특히 야외 스튜디오)

- <한국 드라마박물관> 조성 및 운영
 - 수요는 있으나 현재 전국 어디에도 없는 아이템
 - <근대 건축물 테마파크>와 같은 컨셉도 가능(3만평 넓은 부지 활용)
 - ▶ 개화기 시절 각 나라 공사관 건물, 한국 최초의 손탁호텔, 근대민족학교 교사, 서울역 역사, 중앙청 건물, 서울시청 건물 등 복원
 - 드라마/영화의 소품 및 자동차 등도 전시
 - 지역의 역사/문화 스토리와 연계하는 부대시설 조성 및 운영
 - ▶ 전통적인 골목시장 조성, 어린시절의 국수집, 간이대장간, 참기름집 등

- 지역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 지역스토리의 창작 및 영상콘텐츠 제작에 관한 본산(본거지) 컨셉
 - * 대전과 충북, 유사한 중앙정부 지원 있었으나 하드웨어 중심 시설물임
 - <지역>과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를 강조 ⇒ <지역스토리>
 - <지역스토리> 는 반드시 충남지역 한할 것 아니라 전국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충남이 <전국의 중앙(중심)>인 점을 활용
 - 영상전문대학원 설립(도립) ⇒ 청년실업 해소 및 영상콘텐츠 산실

3) 송기균 경제특보 자영업 통합물류센터

- 충남북지역 슈퍼마켓 물류센터 운영 중
 - 천안, 예산, 서산, 청원, 충주, 제천, 단양
- 사업 내용
 - 소상공인 업종별 공동구매 후 저장 및 물류센터 운영
 - 농수축산물 전처리 작업장으로 운영(슈퍼마켓 Shop in shop)

5. 주요 쟁점

■ 사회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조된 기능 부여 필요

- 경제성으로 인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은 도유재산에 대한 수익성 차원의 관리처분권 행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한 사회적 비판이 뒤따를 가능성이 큼
- 경제성으로 인한 수익성과 타당성은 비판을 받을 지라도, 시행 주체가 공공인 점을 감안하면, 민간의 입장에서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공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본 대상지는 도유재산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대응하며, 기초지자체의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공공기능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음

■ 거시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및 적합한 기능 설정 필요

- 일단의 시설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기능과 시설의 수정·보완·확장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조성코자 하는 기능과 시설의 선정은 매우 중요함
-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 및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능의 설정이 필요함
- 현재보다는 미래 변화에 대응한 기능 부여는 시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획득하기 용이함

■ 충청남도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유지 및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확보 필요

-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중 주목되는 것이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며, 이는 충청남도의 정책방향 설정과 일관된 정책추진은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시설조성 사업은 충청남도의 정책적 일관성에 견주어 일관성을

갖아야하고, 그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함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 조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은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차별성 담보시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획득이 용이함

■ 수요 및 입지적 타당성을 고려한 이용의 효율성 제고

- 대상지 내부적으로는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고, 4동의 건축물이 존재하여 철거 후 개발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함
- 외부적으로는 천안시의 도시개발 등 시가화 경향이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으로 흐르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본 대상지 주변지역은 공간적으로 저비용의 님비시설과 산업시설의 입지가 가중될 가능성이 크고, 비계획적 시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큼
- 수요 및 비용적 압박, 주변 생활환경의 미흡 등은 규모성이 있는 시설의 공급이 풀어야할 과제로 남게 됨
- 따라서, 본 입지시설로 인한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획기적으로 거양하기 보다는 전후방효과를 고려한 점진적 기능이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큼

■ 단일 목적의 시설 공급보다는 다목적 시설의 공급 및 시설간 복합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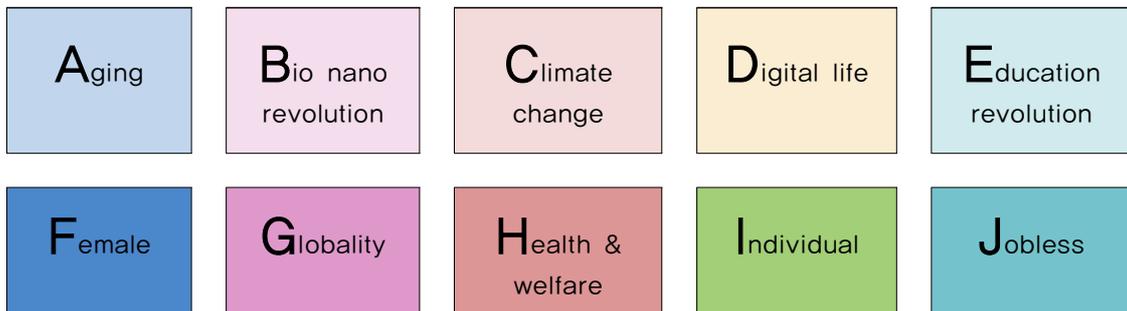
- 공공용도의 시설의 공급은 경제성 측면에서 전후방 파급효과가 산업시설이나 클러스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단일 목적의 규모성 제고 보다는 다목적의 시설을 공급하고 주변 및 광역간의 연계를 통한 연계에 의한 규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시설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시설간 복합화로 인한 유동인구의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Ⅲ. 미래 트렌드-이슈 대비 전략적 대응 분야 설정

1. 거시적 여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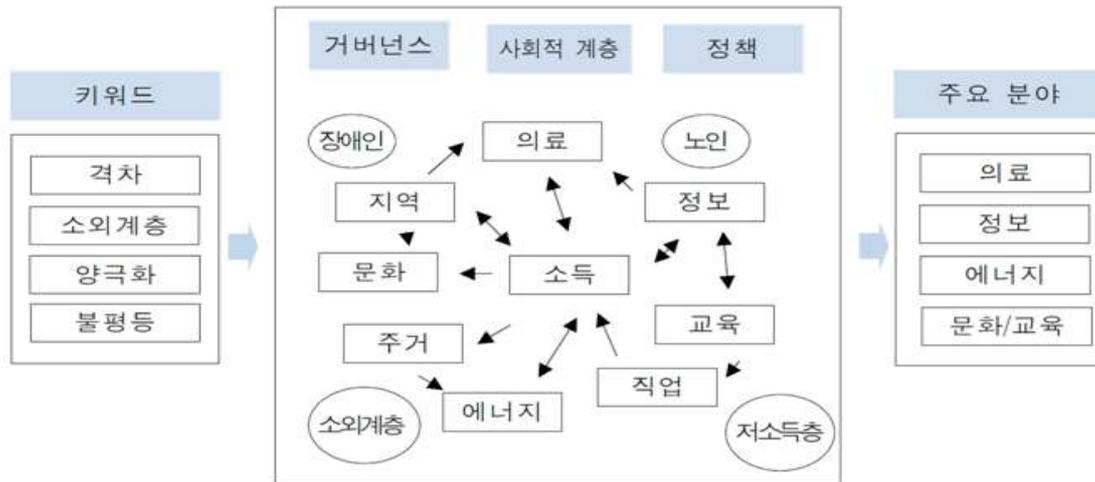
■ 10대 메가트렌드

- UN 미래 포럼에 의하면, 향후 10대 메가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Aging(고령화) : 인구의 저출산, 인구구조의 전환, 내수시장의 감소, 활력의 감소
 - Bio nano revolution(바이오 의료 혁명) : 질병, 수명연장 기술, 장기 교체 등의 혁명, 경제지배층의 수명연장에 대한 열망
 - Climate change(기후에너지산업 부상) :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석탄 연료의 대체
 - Digital life(디지털화) : 아날로그화에서 손(제스처)으로 모든 것을 대체, 사회변화의 촉매자, 직업 및 직장개념의 변화
 - Education revolution(교육 혁명) : 사물지능, 대학교의 소멸(2030)
 - Female(여성성 강화, 감성시대) : 여성 리더십, CEO로 등장
 - Globality(세계화) : 개개인의 국가에서 글로벌화로 진전
 - Health & welfare(의료, 복지) : 개인의 수명연장, 공공영역의 복지 개념의 확장
 - Individual(개인화) : 개개인의 지적수준 향상, SNS의 급부상
 - Jobless(일자리 소멸과 일거리 부상) : 직장 개념의 쇠퇴, 직업 개념으로의 전환



■ 향후의 주요 이슈는 격차, 소외계층, 양극화, 불평등으로 요약 가능(최창택 외, 2015)

- 격 차 : 지역, 에너지, 정보, 소득, 교육, 주거, 소외계층, 일자리
- 소외계층 : 노인, 중소기업, 장애인, 저소득층, 교육, 에너지, 정보, 문화
- 양극화 : 대기업/중소기업, 부동산, 일자리, 소득, 소비, 교육
- 불평등 : 글로벌, 소득, 정보, 일자리, 부동산, 장애인, 에너지, 교육



자료 : 최창택외(2015), 2015년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중 향후 10년내에 일상생활에서 파급효과가 증가할 분야 및 격차는 의료, 정보, 에너지, 문화교육으로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의료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계층별로 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증가 • 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간 불균등 분포 심화 • 건강불평등의 세대간 대물림 현상 발생 	상시적 건강모니터링 질환사전예측 및 예방 원격 의료기관 진단치료
정보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정보격차(digital divide) 발생 증가 • 장노년층의 '정보소외 현상(digital exclusion)' 이 증가 • 참여(participation) 격차, 활용 격차 등의 증가 	공용 무료 인터넷망 유용정보의 자동 제공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에너지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비용으로 인한 에너지빈곤층 발생 • 이상기후로 인한 에너지격차 심화 	에너지 재활용 에너지 손실 방지
문화 교육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계층간 문화생활의 격차 발생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문화예술 관람 격차 뚜렷 • 소득계층 간 교육환경의 격차 발생 	문화콘텐츠 제공 교육콘텐츠 제공 원격 콘텐츠 제공 개인맞춤형 콘텐츠 제공

■ 기술발전에 의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분야는 교육과 직장(직업)의 개념 변화임

- 이러한 10대 트렌드 중 2025년에 미래를 뒤바꿀힘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이 기술발전에 의한 스마트한 세상을 꼽음(린다 그랜트, 2012, 일의 미래)
 - 이것은 스마트폰, 네트워크 사회, 3D프린터를 꼽음
- 이중, 우리나라사회에서 변화의 급물살 속에서도 안전지대였던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함
 - 2025년의 성공의 조건의 가장 핵심은 창의성과 의사소통 능력이며, 직업교육 능력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
- 교육은 특정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현재의 양상에서 창의성과 의사소통능력이 중시되는 교육으로 전환되며, 나이에 따른 교육도 변화를 맞고 있음
 - 18-19세 이전의 교육 : 뇌성장 이전 교육으로, 프로젝트성 수업으로 전환되고, 교육 과목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 과학,기술, 공학, 수학)으로 전환됨
 - 대학교육 : 신기술 교육, 습득체제의 기술변화 적응력을 대응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최신 지식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형태로 전환
 - * 현 대학교육의 체질 개선(2-4년 동안 가르치는 교육의 효용성 변화)
 - * 예) 마이크로 칼리지 전개(미, 다빈치 연구소)
- 또한, 세계와 소통하는 능력에 있어서 조기 영어 교육의 필요성 및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이는 다른 나라 문화수용하고, 교류하기 위한 개방형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함
 - 영어 :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최신 지식의 결과물 (publish)의 대부분이 영어
 - 중국어 : 일자리,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장으로서의 소통을 위한 중국어

2. 중앙정부 정책 기조 변화

■ 정치 행정 분야 : 삶의 질에 대한 요구도 지속 증가하고, 효율성 추구에서 효과성 추구로 전환

- 대량공급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대규모 개발 및 공급주도형 관리방식 → 수요맞춤형으로의 전환
- 양적 성장 → 품격 제고, 여가, 문화수요 다양화에 따른 적정 시설의 공급 및 자원 활용 요구도 증가

■ 경제·산업 분야 : 저성장체제의 지속, 기후변화와 자원위기감 심화, 거대경제권에 의한 신개방 경쟁체제 가속화

- 미국 금융위기 및 유럽경제 침체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경제활동의 둔화 지속 → 금융위기 후 저금리 시대의 전개에 따른 소비성향의 감소, 세계의 생산기지로서의 중국경제가 소비기지로 변화함에 따른 중국경제의 성향 변화
- 화석연료 사용,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 고조 → 탄소배출권 확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범세계적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교토의정서(1997), 발리로드맵(2007)16) 등 글로벌 차원의 대응논의 확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요구 심화

■ 사회·문화 분야 : 인구 감소시대, 고령화 급속화, 개인주의에 기반한 개방형 사회시스템과 사회통합의 가속화

- 인구예측상 절대인구 감소(2018년 기점) → 연령대별 인구구조 역삼각형화로 전환 → 중산층 감소, 재산증식을 위한 부동산 개념 변화, 사회적 안전망 요구 증가
 - 4,934만명(2018년), 4,863만명(2030년)

- 고령화율 가속화로 15.6%(2020년) 전망(OECD국가 중 가장 급속한 진행) → 도시·비도시간 지역 활력도 양극화, 실버산업의 수요 증가
- 대량공급위주의 공공정책 한계 도래, 양극화 심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회통합 정책 전개 - 가치관의 다양화, 주요 주체의 집단화로 인한 공공정책 적용의 한계 → 사회 계층의 다양화 → 계층간 문화 인식차 양극화 → 유동정보의 양극화(폐쇄(기득권)↔ 개방(젊은층) → 기존 전통사회 가치관의 붕괴 위기 → 공간적·문화적 지역적 편중 심각
 - 소외되어온 고령 인구,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수요 확대 및 경제적 비용 지출 확대

■ 기술·환경분야 :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과학기술 보급의 가시화에 따른 생활전반에의 영향력 가시화

- 창의적 상상력에 의한 뉴미디어 아트와 전개 → 미술과 음악,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융복합화 → 젊은층 흡수·대응력 민첩 → 생활문화·관광 등의 패러다임 변화 → 주요 관심사별 수요층 다양화 → 공공정책의 차별화
- 미래 성공 요인에 대한 변화(공부하고, 교류하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
 - 자기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
 -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혜의 선택적 활용(열린마음, 학제적 학습능력)
 - 융합축진을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수 요건(전문성, 중장기적 경험과 신뢰, 프로세스로서의 혁신)

3. 충청남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부문의 선정

■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공공성의 유형 분류

- 우리나라에서 공공성이라는 단어는 공(公)과 사(私)의 구분에서 사(私)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과없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됨
- 이념형으로서의 공공성의 유형은 크게 4개 유형으로 구분됨
- 이중 본 과업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윤리적 공공성 영역이라 할 수 있음

〈표〉 공공성의 유형

구분	도구적 공공성	윤리적 공공성	담화적 공공성	구조적 공공성
초점	국가(공공부문)	국가(공공부문)	공론영역(시민사회)	사회구조
내용	도구적 차원	도덕적 차원	구성적 차원	구조적 차원
행정이론	기본권 보장	사회경제권 보장	참여토론 활성화	착취구조의 폐지
평가분야	인권, 재산권	교육, 복지, 의료보건	언론, 인터넷, 시민사회	불평등
본 과업과의 연관성		○		

주) 임의영(2010),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2호,p18, 재정리

■ 공공공간의 개발과 관련한 공공성의 개념 분류

- 본 과업은 개발행위와 관련이 높으며, 도시·건축분야에서는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공공공간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임²⁾
- 공공공간의 공공성은 절차적 공공성, 내용적 공공성, 주체적 공공성으로 크게 나뉨
- 이중 본 과업과 관련이 높은 부문은 내용적 공공성 측면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적 내용과 관련이 높음

2) 박진수김기수(2013), '공공성' 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계획학회지 통권 제56호

〈표〉 도시·건축분야의 공공성

구분	공정(公定)	공익(公益)	공공(公共)
초점	절차적 공공성	내용적 공공성	주체적 공공성
내용	가시성과 접근성 차원에서 사용되는 공사의 구분에 해당	개인과 집단 차원의 공사구분을 의미하고, 전체와 관련된 어떤 속성이라 의미	절차적 공공성에 기반한 내용으로서의 공공성을 이끌어내는 행위 주체를 의미
본 과업과의 연관성		○	

주) 서울시(2014), 도시개발이익의 합리적 공유방안 마련 연구,p18, 재정리

■ 충청남도가 미래 트렌드(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영역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 **교육분야**는 교육부(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의 강조·확대에서 알수 있듯이 사회적 책임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미래에는 과학기술로 인한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분야임
- 복지분야는 공익성보다는 인권, 재산권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가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국가에서 추진하여야할 영역으로 본 과업에서는 제외함
- 공익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건전한 사회 형성을 위하여 **문화, 소득, 주거, 일자리분야**에 대해서 격차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문화, 소득, 주거, 일자리분야에서 관련 사업의 시행주체는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 연계하는 역할이 중점인 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통합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함

IV. 사업제안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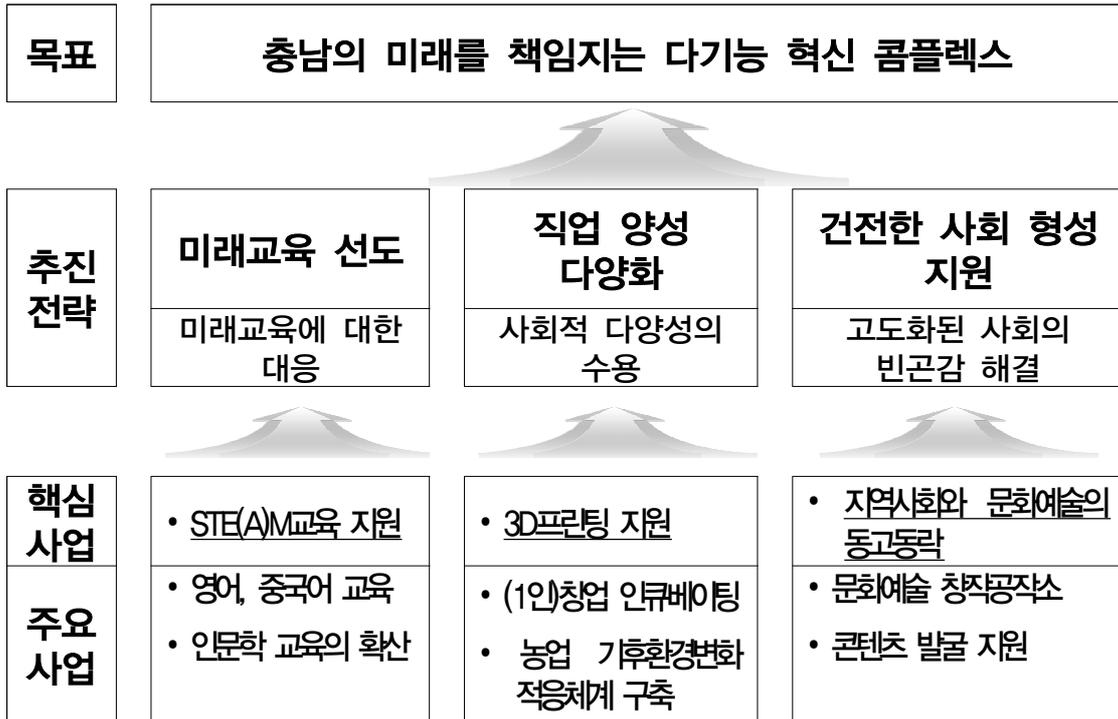
- **공공성에 기반한 충남의 미래를 이끌 영역으로서 문화, 교육부문에 대한 역점적 추진**
 -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변화하지 않았거나 변화해야 할 분야에 대한 역점적인 추진

- **사회전반의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에 역점**
 -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사람에 대한 투자였으며, 향후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지속되어야 할 근원이기도 함

- **고도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빈곤감 해소·최소화를 위한 자기충만감 영역의 투자**
 - 경제적 양극화와 더불어 정신적 빈곤감은 고도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며, 이중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 가능함

- **발전 형태는 소규모로 시작하고, 발전 추이에 따라 점진적 확산을 고려**
 - 대규모의 개발사업은 실패의 위험부담이 높으므로, 해당 부지의 특성과 접목 가능한 기능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기능 소규모 집합체로 시작하되, 발전 추이에 따른 점진적 확산을 고려

2. 목표 및 추진전략



■ [교육] 미래교육을 선도할 STE(A)M교육의 전방위적 지원

- 미래의 교육은 틀에 박힌 지붕아래 교육이 아닌 사회적 다양성에 대응하고, 창의성에 근거한 다양한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접목 및 지원

■ [직업] 소멸하는 직장, 직업 개념의 변화에 대응한 미래 직업 양성소로서의 3D(4D)프린팅 지원

- 충청남도 경제 견인하였던 제조업의 지속적 감소추세에 대응하고, 다양한 미래 직업 양상을 위한 3D(4D)프린터를 활용 기회 극대화 및 미래 직업 양성소 양성

■ [사회] 자기만족감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의 접목 및 지원

- 문화예술의 지역사회 저변확대 및 접촉률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의 동고동락을 통해 고도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빈곤감의 최소화

3. 핵심사업 제안³⁾

1) STE(A)M⁴⁾교육 서비스 거점 구축·운영

(1) 배경 및 목적

- 창의융합교육의 추진을 위해서는 교유기관 중심의 활동이 추진되더라도 장기간 소요 및 도시와 농촌지역의 교육적 공급의 균등화 노력 필요
- 단순교육과 더불어 직업교육, 문화·예술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통합적 교육시스템 필요
- 효율적·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기관간의 협업체제 구축 및 운영이 절실

(2) 현황 및 여건

- 과학기술 융합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중심으로 운영 중이고 STEAM교육협회⁵⁾활동 중⁶⁾
 - 제2차 과학기술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에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초·중·등 수학·과학 교육강화 과제
 - * 주요내용 : 주입식암기식 학습내용의 축소→첨단과학, 생활속 기술에 예술적 수업 기법 적용 체험탐구실험위주로 개발 보급 / STEAM 교사에 대한 단계별 맞춤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기관과 자원을 활용 과학기술교육 실현
 - SEA중 충청남도는 천안장영실로봇, 아산2-로봇플레이의 2개소가 전문기관에 운영 중임
- 과학기술융합에 의한 유망직업의 확대

3) 본 원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목표, 추진전략에서 제시한 사업 중 중앙, 기초지자체에서 담당해야할 영역을 제외하고, 이미 기추진되고 있거나, 중앙정부에서 추진예정인 사업을 제외하고, 충청남도 차원에서 직접 시행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핵심사업에 대해서 기술함.

4) STEAM은 미국의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에 Arts를 추가함

5) SEA : STEAM Education Association, 민간교육단체

6)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부처에서 STEM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재단,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주요 추진부처로 총예산의 약80%이상을 차지(KISTEP(2012), 미국, STEM교육 추진,p3)

- 교재에서 제시한 전문가는 아래와 같으며, 이후 지속 확대 예상
 - * 정보보안 전문가, 게임라이터, IoT전문가, 소환현실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디스플레이개발자,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소셜미디어프로듀서, 클라우드컴퓨팅 전문가, 녹색에너지전문가, 연료전지전문가 등

-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파급효과가 국한될 소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마련·실천은 답보상태

- KISTEP에서 제시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과제	필요성	추진내용
융합인재의 유형별, 영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의 포괄화 경향 • 세분화된 정의 필요 • 융합인재의 유형별, 영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인재 유형별 양성 정책의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식가 양성을 위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융합활용 인재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 프로그램 강화 - 융합참여인재의 참여기회 다각적 제공 • 융합영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과 미술 융합, 과학과 음악융합, 기술과 미술 융합, 기술과 음악 융합 • 융합교육의 적정시기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숙련을 요하는 분야, 전문지식 습득을 요하는 분야, 경험적·사고적 숙련을 요하는 분야
박식가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융합인재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다양한 분야에서 박식(polymathy)한 경향 • 박식가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연극·드라마·인형극·사진 등 융합매체를 통한 교육' 강화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전문가들의 수업 참여' 지원 • 과학고에 '예술사', 예술고에 '과학사' 과목 확대 추진 • 대학원 과정에 '과학사', '음악사', '미술사' 과목의 필수화 유도
융합인재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융합인재는 타 분야 기본원리와 아이디어를 차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소유 • 창의적 사고력 증진 프로그램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사고기법' 훈련과정 신설 •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조가 탐구' 과목 신설 • 고등학교 과정에 '미래예측' 과목 신설 • 교대와 사범대에 '창의적 사고기법' 과목 필수화 장려 • 대학과정에 '창의적 석사과정' 개설 지원
창의성 유발문화 조성 위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 유발문화(Creativogenic Culture)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요소 • 특정시기, 특정장소의 문화는 창의적 인재를 배양하는 결정적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지하철, 인터넷, 옥외광고 등 각종 매체에 '창조국가 캠페인' 전개 • 초·중·등 교육과정에 '독서운동' 강화 및 '중고서적 판매 및 재활용 캠페인' • 민간부문 비영리 전문기관의 활성화 유도 • (가칭) 창의융합문화교육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주) 김왕동(2011),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 과학기술과 예술융합, STEPI insight, p18-24 정리.

(3) 기본방향

- 충청남도가 추진해야할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STE(A)M 교육기회의 평등화를 고려
 - 한국의 STEAM 교육정책은 교육부 중심의 정책으로 경제적 빈곤층, 사회적 약자, 교육적 소외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
 - * 미국의 STEM 교육은 경제적 빈곤층, 흑인, 스페인계, 라틴계 등을 위해 10억 85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⁷⁾하는 등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
- 둘째, 교육과 연관된 기능(산업계)과의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 교육생 입장에서는 지붕아래 강의실의 폐쇄적 분위기 보다는 관련 기관의 현장학습, 첨단 산업 분야의 기관들간의 도움
- 셋째, 교육부 관련하여 총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의 설정 및 사업 발굴이 요구됨
 - 교육부 관련 예산의 집행은 일련의 목적을 위해서 예산의 사용과 감독을 중점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지역차원에서는 그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기능적으로 중첩되지 않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의 설정 및 사업 발굴이 요구됨

(4) 사업내역

- 다기관간의 협업체제 구축(가칭 창의융합문화교육총괄지원위원회)
 -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은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교육부와 관련된 교육기관은 권한과 책임에 의거한 폐쇄성 극복에 장기간 소요
 - 교육기관의 관련 기자재를 활용을 통한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주체간의 협업시스템 및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
 - * 영국 국가창의문화교육자문위원회(NACCCE : National Advisory Committee

7) 김민천(2013), 미국의 STEM교육 정책과 한국의 STEAM 교육 정책의 비교, 전남대 석사학위논문,p71.

on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 운영

- 민간부문의 창의교육을 활성화 및 가치창의융합문화교육총괄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 설립 운영
 - 공공부문만의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재단 설립 및 비영리전문기관 참여 유도
 - * 현재 한국과학창의재단 중심으로 교육기부 활성화 진행중
 - * 미국 창의교육재단(CEF : Creative Education Foundation)
- STE(A)M 저변확대를 위한 독서 문화 캠페인 및 도서 보급(관련총괄 기능은 대상지에 입지)
 - 충청남도의 공공도서관에 STEAM 전문 도서 보급 및 코너 별도 배치
 - 민간의 저렴한 도서구입 장려 및 캠페인 전개
 - * 미국 지역도서관은 야드세일을 통해 서적 판매재활용 문화 정착
- 창의성 유발을 위한 교육소외지역·사각지대의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 기존 방과후 학교 등의 정규교육 외의 사회복지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STE(A)M 교육 활성화
- 직업훈련 교육과 연계한 미래예측 코스 및 방학기간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멘토-멘티제 운영)
 - 직업의 개념 변화, 목표연도 설정에 따른 미래모습, 유망직업, 요구역량 등에 대한 교육
 - 교육을 위한 교육자 발굴육성(사범대, 교육대, 과학기술(고)대와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
 - 창의적 사고기법에 대한 커리큘럼 발굴 운영 및 방학기 집중 교육
 - * 창의적 사고기법은 13가지 생각도구, 브레인스토밍법, 유추법, SCAMPER법 등 다양
- 직업다양성 추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매체의 발굴·보급 및 관련 부

분야 집적 교육

- 지역의 문화예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순수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예술의 접목 및 관심 유도를 위한 교육매체 보급(광고, 연극, 드라마, 인형극, 사진 등)
- 대학기관을 활용한 관련 분야 전문가 집적 교육(건축, 음악, 디자인 등) 및 파트너십 운영
 - * 영국미국 드라마를 통한 교육 : 드라마, 인형극, 사진 등
 - * 영국 CP(Creative partnership) project : 과학자, 건축가, 음악가, 디자이너 등 각분야 전문가 집적 교실 운영

2) 3D 프린팅 교육 허브 구축

(1) 배경 및 목적

- 미래사회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 기술로서 3D 프린터를 꼽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제품 생산방식의 대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함⁸⁾
- 3D프린터의 기술 발달에 따라 활용가능성 증대에 따라 기업의 시제품 제작, 산업분야의 제품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3D 스캐너와 CAD 프로그램의 고도화로 개인 취향이나 욕구를 반영한 제품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대량생산 방식과 다른 맞춤형 생산이 증가할 전망⁹⁾
 - 기존의 시제품 제작방식은 다단계를 거쳐야하지만, 3D프린터 이용시 설계도면에 의해서 제작이 가능함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비용 단축
 - * 예) 자동차 시제품(아반타도르) : 기존 4개월, 4만 달러 → 20일, 3,000달러
- 3D프린트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높은 성장률 기대하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3D프린터 산업 육성을 계획
 - 자동차, 의료, 패션, 항공우주, 건축, 엔터테인먼트, 가전 등 다양

(2) 현황 및 여건

- 일반프린터의 시장은 1,500억 달러(2010)로 예상하고, 3D프린터의 시장규모는 1%규모로 미미하지만, 연평균 20% 수준의 높은 성장률 전망

8)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3D프린터를 3차원의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체형태의 제품을 제작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액체기반형, 분말 기반형, 고체 기반형으로 크게 구분함

- 액체기반형은 레이저나 강한 자외선을 이용하여 재료를 순간적으로 경화시켜 형상을 제작(미국 3D Systems의 SLA 시스템)

- 분말 기반형은 분말형태의 재료를 가열하 나후 결합하여 조형, 재료 형태에 따라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레이저를 사용(미국 3D Systems의 SLS 시스템, 독일 EOS의 SLS 시스템)

- 고체기반형은 와이어또는 필라멘트 형태, 왁스 성질을 가진 패럿, 얇은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 형태의 자료를 활용한 형태(미국 Stratasys의 FDM 시스템, 이스라엘의 Objet사의 Polyjet 시스템, 미국 Helisys사의 LOM 시스템)

9) 김홍태(2013),KB daily 지식 비타민 : 3D 프린터 시장 현황과 파급효과,p3

- 시장규모 11억 달러(2009) → 17억 달러(2011) → 65억달러(2019) 예측(Wohlers Associate, 2012)
- 미국의 글로벌 시장 70%이상 점유(Stratasys 53%, 3D Systems 22%)
- 다양한 파급효과 대비 실생활과 연관된 활용범위는 지속 증가 예상
 - 생활용품, 피규어·미니어처등의 장난감, 시제품 제작, 교육용 자료, 예술 조형 작업, 각종 기계 및 총기 부품, 초콜릿·쿠키 반죽 등의 음식, 의료 연구용 모형, 생체 조직 등
 - 이러한 3D프린터의 보급 및 대중화에 관련해서는 오픈소스에 기반한 렘랩(RepRap)¹⁰⁾ 프로젝트 영향이 큼
-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3D 프린터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3D프린터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중요 기관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무한상상실(www.ideaall.net) 운영사업¹¹⁾이고, 실험·공방형, 스토리텔링형, 아이디어클럽형의 프로그램 운영중임
 - 미래창조과학부 : 무한상상실 - 과학관을 중심으로 제작공방, 스토리텔링클럽, 아이디어클럽 등을 운영하는 무한상상실 설치·운영
 - 교육부 : 학교내 무한상상실 - 학교 교과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능한 학교내 무한상상실 운영 (다빈치 프로젝트, 미래부 협업)
 - 문화체육관광부 : 무한상상실 - 공공 도서관에 디지털콘텐츠 제작시설 설치, 커뮤니티활동·교육 등이 제공되는 무한상상실 설치·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 창조공작 플라자 - 청소년들이 기술실습·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아이디어를 직접 제품화 할 수 있는 창조공작플라자 설치·운영
 - 특허청 : IP창조Zone -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내에 아이디어와 지식

10) 렘랩은 신속한 프로토타입 복제기(Replicating Rapid Prototyper)의 약자. '누구나 3D 프린터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아드리안 보이어(Adrian Bowyer)라는 영국의 기계공학 교수에 의해 2005년부터 시작됨

11) 무한상상실 : 과학관, 도서관, 진센터 등 새오할공간에 설치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국민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제작을 하거나 UCC제작·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MIT 미디어랩의 Fab LAB, 미국의 Tech shop, 영국 스토리텔링 협회)(한국과학창의재단(2015), 2015년 무한상상실 사업설명, p2)

재산의 교육·실현을 위한 IP 창조 Zone 설치·운영

- 우정사업본부 : 무한상상실(이야기우체통) - 우체국 시설에 스토리텔링형 모델을 기본으로 운영하는 무한상상실 설치·운영

- 충청남도는 당진도서관, 우정공무원교육원, 청운문화재단, 호서대학교에서 운영 중

- 중앙부처의 관련사업은 기관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 성과물 활용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한국과학창의재단(2015))¹²⁾
 - 거점기관과 소규모기관, 지역의 대학 및 출연(연), 문화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
 - 14년 총 2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독창적인 프로그램 기획, 기존 문화사업 콘텐츠와의 연계 등에 한계
 - 무한상상실을 통해 제작된 창작물 및 시제품이 연 3,000 건에 이르나, 전시 및 상품화 등의 활용이 부족

(3) 기본방향

- 3D 프린팅을 활용 보편화를 위한 고가격으로 인한 접근성 해소
 - 일반 주민이나 예비 창업자가 접근하려고 하더라도, 현재 3D프린터가 관련 산업이 초기 단계로 3D프린터의 고가격, 이용소재의 고비용으로 접근성이 매우 어려움
- 3D프린터 제품의 품질보증 해결
 - 고가 3D프린터 사용 제품 대비 저가 3D 프린터 제품의 품질 하락 및 산업화를 위한 품질 보증제도의 필요
- 지적재산권의 해결
 - 디자인분야는 창의성과 독창성에 근거한 지적재산권이 중요하지만, 3D프린터는 오픈소스에 의해 구현되는 바,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준과

12) 한국과학창의재단(2015), 2015년 무한상상실 사업설명, p3

관리방안이 요구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교육이나 디자인 도구의 개발 및 지원
 - 현재는 3D프린터 관련 교육이 80~100% 국비로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AD등의 훈련이 필요하고, 이는 실제 제품을 제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4) 사업 내역

- 한국과학창의재단 등과 연계한 협력체제의 구축
 -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시행하는 운영프로그램, 교육, 컨설팅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수요 파악 및 적응 대체 구축
 - * 특히, 운영자 교육의 경우 ICT기반 코딩 프로그램, IOT의 특성·확장성 등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한 메이커 관련 실무 운영자 교육 총괄 실시예정인 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제공 및 대응
- 시군별 3D프린터 설치 지원 및 다분야 통합교육기능 추진
 - 시군별 3D 프린터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현재 고가의 3D 프린터, 재료의 고가로 인하여 일반 주민 및 창업희망자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3D프린터의 기계 지원
 - 창업아이디어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호서대학교 프로그램 운영과의 연계보완 또는 추가)
 - 인적자원개발 측면, 문화산업진흥 측면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교육 시행
 - * 전국 무한상상실은 전체 41개소, 거점형 13개소, 28개소 운영 중(2015. 6 현재)
 - * 충남의 거점형은 호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부품 및 로봇제작, 시제품제작,스마트앱 창작, 창업아이디어 클럽형 모델)으로 추진
 - * 타 지자체는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을 통하여 3D프린터를 활용
 - * 강원도 산경경제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위해 마케팅지원, 창업지원, R&D과제 기획 지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프랜차이즈 육성을 하고 있으며, 이중 창작교실, 특허연구실, 창업보육실, 3D구현실을 운영 중

- * 부산은 부산인적자원개발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창의교육콘텐츠 스토리텔링 퍼실리테이터 양성, 나의 창조 DNA찾기, 위메이크 상상실험 프로젝트, 평생학습 상상영화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
 -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스마트 IoT 실험공방, 로봇키트 실험공방, 스토리텔링 창작 클럽, 아이디어 클럽을 운영 중
 - * 강원도 농산물원종장은 귀농귀촌아카데미, 농업기술 발명교실, 3D프린터로 실현하는 농업 무한상상도우미,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공충 채집, 사육도구 공작교실을 운영중이며, 이중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시제품제작, 활용평가사업을 운영 중
- 지적재산권 해결 및 제품 품질보증제도 도입 운영
 -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랩랩형태의 아이디어 제안 풀 및 클라우딩시스템 구축 운영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관리방안 마련 및 관리
 - 시제품에 대한 컨설팅, 인큐베이팅 및 산업체 연결
 - 3D프린터 관련 분야 교육자 육성 및 교육생별 특성화 교육
 - 일반인의 교육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CAD 기본 교육 이수 및 아이디어 접목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전문 요원 배치 및 교육(1대1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 수요에 의한 교육 커리큘럼의 다양한 발굴 및 교육생 집체 교육, 수준별 밀착 교육 시행
 - * 현재의 국비 지원하의 교육은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8-10주간의 교육을 시행하지만, 기초지식에 해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3D프린팅 관련 융합산업 발굴, 산업체 연결망 확보 및 홍보
 - 시제품에 대한 다분야 컨설팅 및 전시회 개최
 - 다분야의 3D프린팅 관련 융합산업의 발굴 및 산업체와의 연계로 지식산업을 선도

3)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인의 동고동락

(1) 배경 및 목적

- 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 예정(법9조)
 - 문화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와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 삶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질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가능
-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한편, 전문 예술인에 대한 복지제고차원의 “예술인 복지법” 시행되고 있지만, 전문 예술인들이 창작활동 전개나 처우개선 등의 과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그 실태 조사와 정책방안 강구도 필요한 상황임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레지던시¹³⁾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을 영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나,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지 않고 떠나는 등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이 어려운 상황임

(2) 현황 및 여건

- 레지던시와 관련되어 창작스튜디오¹⁴⁾, 창작레지던시 창작실, 창작레지던시, 창작실, 창작공간, 작업실, 예술촌, 예술마을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실제 2013년 국내 창작스튜디오 운영실태 조사 결과, 현재 124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 중 레지던시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13) 레지던시 : 공공 예술지원정책 하나로 예술가에게 작업공간이나 창작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여 예술가 자신의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창조력 제고를 높여나가 예술계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전병태(2013),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합형 레지던시 공간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14) 레지던스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는 ‘창작스튜디오’가 있으며, 창작스튜디오는 학문적이나 제도적으로 정착된 개념은 아니지만, 작가들에게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숙사를 겸비한 아카데미이며, 작가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작가들이 마음 놓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김연진(2013), 창작스튜디오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개임

* NEO-PRIME ARTIST 레지던시(서울 논현동), 더하기센터2F-아시아예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광주 남산동), 대담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전남 담양읍), 장월미술관레지던시 '예술인사랑방' (전남 함평군), 도화헌 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전남 고흥군) 등

- 이러한 레지던시는 크게 장소 및 재정지원형, 작품제작 중심형, 융합-교류형, 지역네트워크형으로 유형 구분하고, 운영 프로그램은 예술가활동지원프로그램, 국내외 교류프로그램, 지역연계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복합예술문화창조 프로그램으로 나뉨

〈표〉 레지던시 유형

구분	내용	접목가능성
장소 및 재정 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작업에 대한 대가로 임금형태 등으로 재정 지원하는 형태 • 재정적으로 열악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 등에게 안정적 창작환경 제공 목적 	
작품 제작 중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또는 공동으로 일정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기본적인 레지던시 운영프로그램으로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는 예술가들에게 작업실 제공하여 안정적 창작환경 지원 	
융합-교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상호교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최근 예술이 복합/융합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협업을 통한 무한 시너지 발현 시도 	○
지역네트워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가 지역예술 및 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예술을 접할 기회 제공 • 최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많은 창작스튜디오들이 지향하고 있는 형태임 	○

〈표〉 주요 운영 프로그램

구분	내용	접목가능성	
예술가활동지원 프로그램	창작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공간 및 비용제공, 예술가교육 세미나, 기획자와의 만남, 공개 프리젠테이션, 공연, 창작발표기회 제공 등 	
	경력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예술가 프로그램, 개인 독립예술가 프로그램, 예술가 회의(워크샵), 컨설턴트, 개인예술가를 위한 정보의 출판 등 	
국내외 교류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상호)교환, 예술가초청, 예술가투어, 지원예술가 선발, 장학금 지원 등 	○	
지역연계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 연계프로그램, 지역축제 연계 프로그램, 주변 시설 연계 프로그램, 지역문화 환경 개선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및 학생 대상 프로그램, 학교 및 사회복지 시설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 레지던시 개방 지역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술체험, 캠프프로그램 진행 	○	
복합예술문화 창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과학, 예술-비즈니스 포럼 등 복합, 연계 프로그램 	○	

- 문화예술을 접목시키고자 지방주도의 레지던시(창작스튜디오)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숙소와 거주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50%임
 - 우리나라에서 운영형태는 정부주도 2.1%, 지방주도 38.5%, 법인 16.7%, 민간단체 17.7%, 기업 4.2%, 개인 20.8%

- 생활문화예술과 참여형 예술의 확산 및 접목으로 주민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활동하는 추세
 - 지역에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를 주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 지역 재생 프로젝트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 해주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양혜원김혜인(2012)¹⁵⁾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재생(지역재생)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 진흥측면의 사업단위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보다 앞서서 문화예술생태계 마련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의 경우 지역역량강화, 공동체 역량강화, 공동체성 증진이라는 목표아래, 문화예술인을 영입하여 지역공동체와의 연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정투입 종료 후에는 레지던시 운영이 현실상 어렵고,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5) '바벨 디스크스 프로젝트' 와 같은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상화와 함께하는 골목주민 다다 프로젝트', '장흥 오~라이 프로젝트', '마을이야기학교' 등과 같이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삶과 사회적 환경, 이슈들을 주제로 능동적으로 예술에 참여하는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역주민이 '지역문화공동체의 문화예술생산자' 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양혜원김혜인(2012))

(3) 기본방향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관련 법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지역수요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와 지원범위, 재정, 추진체계에 대한 근거 마련
- 문화예술고유 분야외에 타 분야와의 융합에 따른 스펙트럼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예술과 복지의 결합, 세대별 다층화 및 중장년층의 문화여가소비 증가, SNS와의 결합 등
- 스마트한 기부문화의 확산과 관리로 관련 주체간의 매개 및 전달 서비스 최적화
 - 특권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이 아닌 생활문화로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생산자 = 문화예술소비자” 로 기능할 수 있는 풍토 마련

(4) 세부 사업 내역

- 충청남도 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 *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상 생활속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문화시서 확충 및 지원, 생애주기별 생활문화활동 지원, 문화예술 치유형 복합센터 구축, 문화나눔 확대 및 문화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창의 인재 양성, 문화야당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문화형성
 - * 예술과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의 재창조를 위해서 주민참여형주민주체형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문화예술지원 밀집지역의 문화지구 지정 및 육성,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문화예술을 통한 일상공간의 재생 및 활성화, 예술과 문화를 통한 지역마케팅 활성화
 -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일부 거점 시설 및 지원을 위해서는 레지던시 운영을 통한 지원도 가능
 - * 대구 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참고
 - * 현대미술관 레지던시 운영 규정 참고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향수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대구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대구예술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등) 대구예술발전소(이하 “예술발전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길 31-12에 두며 전시실, 예술정보실, 수창홀, 세미나실, 창작작업실, 수창고 등의 시설을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발전소 내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입주”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창작작업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용·수익허기”란 창작작업실을 제외한 예술발전소를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요사업) 예술발전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입주 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창작 지원
2. 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창작 문화활동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5. 예술발전소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운영
6.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예술발전소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예술발전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시간) ① 예술발전소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 10:00~19:00
2. 동절기(11월~다음년도 3월) : 10:00~18:00
- ②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예술발전소의 운영을 위해 조정·심의·자문 및 창작작업실의 입주자 선정 등을 위한 대구예술발전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대구예술발전소 입주자선정 심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대관허가) ① 예술발전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대관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시 또는 공연 계획서 등을 기재한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관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술발전소의 관리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 등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대관허가 범위) 예술발전소의 시설 중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전시실, 수창홀, 세미나실, 회의실, 교육실 등
2. 부속시설 : 냉·난방설비 등

제10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3조제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관료의 납부) 제8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별표 1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제18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전액면제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창의성, 실험성 등 예술성이 있는 행사 : 전액면제
3. 시 또는 수탁자가 후원하는 행사 : 대관료의 100분의 50 감액

② 납부 받은 대관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대관료 전부를 대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예술발전소의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할 수 없는 경우
- ③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한다.

1. 대관 사용일 개시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에서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뺀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대관 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2. 대관 사용일 개시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관료에서 100분의 10을 위약금으

로 뺀 나머지를 반환한다.

제13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공연 등을 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발전소 시설 등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관람료) ① 제8조에 의한 대관자가 전시·공연 등을 하는 경우 일반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자는 관람료 부과, 징수 등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관람권의 발행 및 매표·수표관리, 관람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창작작업실 입주허가) ①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주를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입주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인터넷이용료, 냉·난방비 등 제세공과금)는 입주한 자가 부담한다.
- ④ 시장은 제3항 단서 규정 중 냉난방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 ⑤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의 선정과 입주허가 취소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작품의 취득 및 관리) ① 시장은 예술발전소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기증자에게 수령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작품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예술발전소 소유 작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예술발전소 내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예술발전소의 효율적 운영 및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발전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③ 예술발전소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관람자와 시설사용자 등이 예술발전소의 전시품 및 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대미술관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정 2004. 6. 18. 예규 제 46호
 일부개정 2008. 6. 3. 예규 제 77호
 개정 2010. 4. 27. 예규 제 106호
 개정 2006. 4. 13. 예규 제 66호
 개정 2010. 1. 14. 예규 제 95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에서 구축하고,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주 기간)
 레지던시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입주 기간 중의 활동 성과, 프로그램 참여도, 향후 프로그램 기여 가능성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

1. 장기 입주: 12개월
2. 단기 입주: 6개월 이하
3.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운영 시간)
 레지던시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 :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레지던시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실 : 미술관 개관일정에 준하여 운영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운영 프로그램)
 레지던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2.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3. 오픈 스튜디오 개최
4.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
5. 도록 등 출판물 발간
6.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국내외 미술작가 상호 교환입주 프로그램 운영
8. 지역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미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9. 평론가, 기획자, 타 장르 관계자 초청 프로그램 운영
10. 레지던시 출신 작가 지원 프로그램
11. 기타 레지던시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5조(입주 자격)

레지던시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레지던시 입주 경력이 없는 국내외 미술작가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
2. 레지던시 입주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로 추천을 통해 선정된 자
3. 레지던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초청받은 작가 혹은 작가 이외의 평론가, 기획자, 타 장르 관계자로 초청받은 자
4. 미술관의 전시, 수집, 연구설치 등의 목적을 위해 작품제작 또는 기증을 의뢰받은 작가

제6조(레지던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① 레지던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레지던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입주자 선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3호, 제4호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레지던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미술계 주요인사를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운영계획의 수립)

관장은 매년 당해연도의 입주자 선정 계획 등을 포함한 레지던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공무 및 추천 입주자의 선정

제8조(입주자 선정방식)

제5조 제1호, 제2호의 입주자는 공모 및 추천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입주신청 공고)

제5조 제1호에 의거한 입주자 선발 시 관장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모 입주자 심사위원회 구성)

- ① 공모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입주자 선정 예비심사위원회(이하 "예비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예비심사위원회는 관장이 학예연구직 직원 및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팀 담당자 중에서 5인 이내로 지정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1. 관장
 2.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팀장
 3. 학예연구팀장
 4. 미술계 주요인사 4인

제11조(공모 입주자 선정 방법)

- ① 공모 입주자 선발심사는 예비 심사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예비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종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입주자 선정 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각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 ④ 심사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팀 공무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신속한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추천 입주자 추천위원 위촉)

- ① 제5조 제2호의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은 미술계 주요인사 5인 이내로 관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추천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3조(추천 입주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① 추천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회 구성은 제10조 제3항과 같다.

제14조(추천 입주자 선정 방법)

- ① 추천 입주자 심사는 서류심사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추천 입주자 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입주신청 서류)

레지던시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술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① 공모신청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신청서 1부 - 소정양식(별지 제1호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 없음
 3. 작품소개 자료(도록, 사진, 영상물, 슬라이드 등)

4.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1부
 5. 국내의 전시활동 경력 - 소정양식 없음
 6. 국내의 수상 경력 - 소정양식 없음
 7.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 - 소정양식 없음
- ② 추천입주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 1부
 2. 제1항의 2호~7호

제3장 입주자의 레지던시 사용 등

제16조(입주 절차)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입주자는 레지던시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 체결 등 관장이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제17조(이용 의무)

- ① 입주자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미술관에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미술관은 입주자의 매월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에 입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각종 사고 예방)

- ① 미술관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② 입주자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자율적으로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료 부담)

레지던시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인터넷 이용료 등은 미술관에서 부담하고, 기타 이용료의 부담 등에 관하여는 미술관과 입주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입주자 지원 관리)

- ① 관장은 제5조 제1호, 제2호의 입주자가 연간 3분의 1 이상을 이용하지 않고 자진 퇴실하거나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는 레지던시 입주자로서의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관장은 개인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레지던시 입주자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개인 작업실 개방)

미술관은 레지던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관계 인사 등에게 레지던시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할 수 있다.

제22조(입주자 준수사항)

입주자는 레지던시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레지던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타 작가 등에게 개인 작업실을 이용하게 하거나 그 가족이 함께 숙박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입주자는 레지던시 내의 제반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입주자는 미술관이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의 냉난방 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사용이 불가피 할 때에는 사전에 미술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6. 입주자는 레지던시에서 기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7. 입주자의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간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술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퇴실)

- ① 입주자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 ② 관장은 입주자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22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경고 등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당해 입주자를 선발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입주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④ 입주자의 조기 퇴실 등의 이유로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 차 순위 예비선정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시설 개선 등 미술관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전시실 사용)

- ① 입주자 중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실 사용자"라 한다)는 전시기획안(별지 제2호서식)을 미술관에 제출하여 사전 심의 후 전시를 개최하며, 전시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미술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2004. 6.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시행한다.

- 지역사회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문화예술인의 적극적 참여
 -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또는 지역 자원발굴, 지역개발 등 참여
 - * 스페이스 빔의 '배다리도시학교' '골목이야기 발굴' 등
 - 지역주민이 레지던시 운영자로 참여(레지던시 공동주주형태로 운영, 교육, 캠프 등 장기적 참여 유도)

- 스마트 기부문화 정착 및 투자로의 전환
 - 젊은 층의 기부참여자 확산을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 * 소셜 100원의 기적, 해피빈, 기부천사, 기부톡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 문화 확산 중
 - * 영국 문화매체체육부는 모바일을 통한 문화예술기부 플랫폼을 구축운영
 - 자금력이 부족한 예술단체나 창작자들의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방식의 모금 방식 전개(핀테크 활용한 플랫폼 구축운영)
 - * 최근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투자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방식은 P2P금융 클라우드 펀딩 투자 플랫폼으로 전환 중
 - 지역사회, 문화예술인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운영·관리

- 신진 문화예술인 지원 및 문화 전문인력 양성¹⁶⁾
 - 지역문화진흥법상의 주민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같이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의 여건 제공과 각종 지원책 마련
 -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추진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16) 한상우(2014), 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의 의의와 경남도의 과제, 경남발전 제133호,p87.